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 ~ 9. 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usrud1419@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83호
----------	--------

발의연월일 : 2023. 7. 31.

발의자 : 장경순 의원, 장경원 의원,
나안수 의원, 유승현 의원,
정홍준 의원, 김영진 의원,
강형구 의원, 최현아 의원,
김태훈 의원, 박계수 의원,
정광현 의원, 이향기 의원,
양동진 의원, 오행숙 의원,
서선란 의원

1.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 시행)에 따라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여대상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예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격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추가(안 제2조제4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에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
-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

3. 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붙임 1】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를 “명예시민증”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에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

제3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에”를 “제1호 서식에 따라”로, “증빙자료”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빈이라 함은”을 “귀빈이란”으로,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3조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

로, “별표 2에 의한”을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회”를 “순천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를 “수여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8조 중 “명예시민증”을 “시장은 명예시민증”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6하원칙에 의거”를 “육하원칙에 따라”로, “증빙자료”를 “증명서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u>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u>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명예시민증</u> ----- ----- -----.
제2조(수여자격)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 아닌 <u>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u>	제2조(수여자격) ----- ----- -- <u>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u> ----.
1. 대외적으로 순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u>자</u>	1. ----- ----- <u>사람</u>
2. 환경, 교육,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경제, 보건복지 분야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u>자</u>	2. ----- ----- ----- <u>사람</u>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u>자</u>	3. ----- ----- ----- <u>사람</u>
<u><신 설></u>	4. 「 <u>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u> 」 제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에 <u>개인별</u> <u>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u> 을 기부한 <u>사람</u>
4. <u>기타</u>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5. <u>그 밖에</u>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

현행	개정안
<u>자</u>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시장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자</u>에 대하여 추천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u>자</u>를 말한다. 1. (생략) 2. 자매결연·우호협약에 <u>의한</u> 외국도시의 단체장 제5조(명예시민증 등) ① 제3조의 <u>규정에 의해</u>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으로 결정된 <u>자</u> 중 내국인은 별표 1, 외국인은 <u>별표 2에 의한</u>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u>자</u>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별표	<u>는 사람</u>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 ----- ----- ----- ----- <u>사람</u>-----. ② ----- ----- 제1호 서식에 <u>따라</u>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u>증명서류</u>-----.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귀빈이란</u>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u>사람을</u> ---. 1. (현행과 같음) 2. ----- <u>따른</u> ----- 제5조(명예시민증 등) ① 제3조에 <u>따라</u>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으로 결정된 <u>사람</u> 중 내국인은 별표 1, 외국인은 <u>별표 2의</u> -----. ② ----- <u>사람</u>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u>-----

현행	개정안
3의 메달이나 기념패(내국인은 별표4, 외국인은 별표5)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 위촉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제8조(기록유지)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회수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 ----- -----. 제6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순천시의회-----. 1. 수여취지----- 2. ----- 사람이 ----- 제8조(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회수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 [별지 제1호서식]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현행				개정안				
사진	성명			사진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국적(출생지)				국적(출생지)			
	직위또는직업				직위또는직업			
주소 및 연락처	주택	주소		주소 및 연락처	주택	주소		
		전화				전화		
	사무실	주소			사무실	사무실	주소	
		전화					전화	
학력 및 주요경력				학력 및 주요경력				
공적요약				공적요약				
※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한다.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첨부한다.				
추천인		직위(직급)	성명 ㉠	추천인		직위(직급)	성명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 순천시의회의원 장경순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2

관련자료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일련 번호	성 명	학력	직업 (직위)	공적 개요	수여일시	취소	
						일시	사유
1	김영희	서울 대학교	국장 (PD)	2003년 대한민국 제1호 순천기적의도서관을 유치하여 도서관과 독서문화 창달에 큰 기여	2013. 11. 1.		
2	신원섭	충북 대학교	산림청장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의 성공적 개최 및 『수목원·정원법』개정으로 정원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2016. 1. 5.		
3	이학수	백제예술 대학	군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행사 및 순천만국가정원 선포식 식전 공연등 순천시 홍보에 기여함.	2017. 9. 1.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84호
----------	--------

발의연월일 : 2023. 7. 31.

장경순 의원, 장경원 의원,
나안수 의원, 정홍준 의원,
유승현 의원, 김영진 의원,
발의자 : 강형구 의원, 김태훈 의원,
박계수 의원, 정광현 의원,
이향기 의원, 양동진 의원,
서선란 의원, 오행숙 의원

1. 개정이유

- 경로당 회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높은 책임감과 함께 노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 경로당 지원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 지원(월 5만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붙임 1】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활동비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활동비 지원) ① 시장</u> <u>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u> <u>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u> <u>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u> <u>있다.</u> <u>②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하는</u> <u>활동비는 월 5만원으로 한다.</u>

【붙임 2】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6조의2(활동비 지원)

제6조의2(활동비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5만원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전제

○ 경로당 회장 활동 경비

- 인 원 : 682명(경로당 회장)
- 활동비 : 5만원/명/월

4.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636,800	-	-409,200	-409,200	-409,200	-409,200
세입(a)	-	-	-	-	-	-
세출(b)	1,636,800	-	409,200	409,200	409,200	409,20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1,636,800	-	409,200	409,200	409,200	409,200
시 비	1,636,800	-	409,200	409,200	409,200	409,200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소요예산 : 409,200천원/연

○ 산출기초 : 682명 × 5만원 × 12개월

7. 협의사항 : 해당 없음

8.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9. 작성자 : 순천시의회의원 장경순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07. 12. 13., 2011. 12. 8., 2017. 9. 5.>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관련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3. 6. 30.	가족돌봄과
2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8.	경로장애인과
3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2022. 11. 10.	
4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2. 3. 8.	주민복지과
5	속초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23.	경로장애인과
6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2022. 12. 26.	노인시설과
7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2020. 12. 23.	노인장애인과
8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17.	
9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	2021. 4. 5.	주민복지과
10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2021. 3. 22.	노인장애인과
11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2. 11. 29.	
12	태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023. 2. 28.	가족정책과
13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24.	노인장애인과
14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2023. 3. 29.	노인장애인복지과
15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2021. 5. 31.	경로복지과
16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2021. 10. 5.	중장년노인복지과
17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4.	가족복지과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85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의자 : 김태훈 의원, 최미희 의원,
오행숙 의원, 이복남 의원,
장경원 의원, 최현아 의원,
강형구 의원

1. 제정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금주구역의 지정(안 제4조)
- 시민 등의 참여(안 제5조)
- 청소년의 보호(안 제6조)
- 음주폐해로부터 보호(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과태료(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붙임 1】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감경 등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조례안 제8조(교육 및 홍보), 제9조(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제8조(교육 및 홍보), 제9조(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그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김 태 훈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생략)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 1 항 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4조 제 1 항 제1호의2	170	330	500
<u>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u>	<u>법 제34조 제 3 항 제1호</u>	<u>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u>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 1 항 제1호의3	170	330	500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 2 항 제1호	75	150	300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 3 항 제2호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사.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 1 항 제2호	170	330	500
아.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 1 항 제3호	170	330	500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 1 항 제4호	170	330	500
차.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 2 항 제3호	75	150	300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가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3. 2.	보건소 건강증진과
2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2023. 6. 9.	
3	강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2021. 12. 30.	
4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1. 9.	건강증진과
5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20. 12. 31.	
6	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2023. 4. 6.	출산지원담당
7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14.	건강증진과
8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12. 28.	
9	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25.	건강생활과
10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19.	건강증진과
11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2020. 3. 1.	
12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5. 25.	우산건강생활 지원센터
13	광주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3. 30.	
14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6.	건강정책과
15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30.	건강증진
16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3.	건강증진과
17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30.	건강증진과
18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9.	건강관리과 시민건강계
19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16.	산본보건지소
20	금산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22.	보건소 건강증진과
21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7.	보건사업과
22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12. 31.	지역보건과
23	나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8.	건강증진과
24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6. 28.	건강증진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12.	
26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17.	건강생활과 건강증진담당
27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31.	
28	담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2022. 11. 7.	
29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18. 8. 10.	건강증진과
30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0.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31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8. 12.	건강증진과
32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10.	건강증진과
33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	2022. 11. 16.	
34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28.	보건과
35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2019. 12. 27.	
36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6. 21.	건강정책과
37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2016. 10. 17.	
38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2. 27.	건강증진과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11.	예방의약과
40	대전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7.	보건소
41	목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4. 18.	건강증진과
42	무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0. 20.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43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11. 10.	보건행정과
44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17.	건강증진과
45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46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17. 5. 31.	
47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23. 5. 17.	보건소
48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4. 10.	
49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10. 16.	건강증진과
50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19. 5. 17.	건강증진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10.	
52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19. 6. 17.	
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에 관한 조례	2017. 9. 20.	건강증진과
54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3.	
55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26.	
56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8. 1.	건강증진과
57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2. 27.	건강증진과
58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2. 31.	건강증진과
59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9.	의약과
60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1. 7.	스마트건강과
61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20.	보건소 보건행정과
62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7.	
6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5. 12.	
6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7. 30.	보건소 (생활보건과)
65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15.	보건정책과
6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13.	보건정책과
67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4. 6.	건강증진과
68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24.	
6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0. 4.	지역건강과
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10.	
71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8.	건강정책과
7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14.	건강증진과
73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0.	지역보건과
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5. 16.	감염병관리과
75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7. 5.	건강증진과 건강환경팀
76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4.	보건지소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77	서울특별시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24.	
78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2. 24.	분당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79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18. 10. 10.	건강증진과
80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5. 29.	
81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22. 12. 15.	
82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9.	건강증진과
83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11.	만안보건과
84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23. 3. 30.	건강증진과
85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2022. 10. 7.	
86	여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	건강증진과
87	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0. 13.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88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2023. 1. 25.	보건소
89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8.	
90	웅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6.	
91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9. 23.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92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5. 2.	보건소 건강증진과
93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16.	
94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2023. 5. 19.	건강증진과
95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5.	
96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9. 28.	건강증진과
97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9.	
98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2021. 11. 18.	보건사업과
99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21. 12. 30.	
1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4. 27.	건강증진과
101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31.	건강증진과
1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5. 21.	건강증진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03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2021. 9. 30.	건강증진과
104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17. 6. 2.	
105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2. 15.	건강증진과
106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21. 12. 31.	건강관리과
107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7. 1.	
108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11. 19.	보건소
109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5.	
110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8. 6.	건강증진과
111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5. 13.	건강관리과
112	철원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8. 10.	보건정책과
113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8. 11.	
114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5.	
115	춘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30.	건강관리과
116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1.	
117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2021. 7. 20.	
118	태백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2022. 11. 18.	보건소 건강과
119	평택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18. 12. 18.	건강증진과
120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5. 13.	건강증진과
121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12. 10.	
122	함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2021. 11. 15.	건강증진담당
123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11. 22.	
124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1. 26.	
125	화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2022. 12. 30.	보건사업과
126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2022. 9. 23.	보건소 건강증진과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이영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86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28.

발의자 : 이영란 의원, 정광현 의원,
최미희 의원, 김태훈 의원,
나안수 의원, 김미연 의원,
장경원 의원

1. 제정이유

- 은둔형 외톨이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사회적 정의의 모호, 검증 및 해결 방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정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긴급히 요구됨.
- 이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및 시장의 종합적인 시책 추진 의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4조 ~ 제5조)
- 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 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치유상담, 복지서비스 개발,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평생교육 지원 등 규정(안 제7조 ~ 제9조)
- 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규정(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기본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붙임 1】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이 고통을 완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제7조제2항의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단체의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추진)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치유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2. 은둔형 외톨이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취업 및 진로 상담
3. 은둔형 외톨이의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4. 은둔형 외톨이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서비스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산하기관을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발굴 및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제9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추진), 안 제8조(전문인력 양성)
안 제9조(평생교육 지원), 안 제10조(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에 따른 비용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의 규모 확정 시 추계가 가능한 사항으로,
- 현재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이영란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료

□ **연구** : 2000년대 초반부터 정신의학계, 상담학계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지지부진하였음

□ **정의** : 은둔형 외톨이란 ‘친구 없이(혹은 하나) 3개월 이상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여인중, 2005)’ 또는 ‘사회적 소속감이 없고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문제를 혼자서 또는 가족 안에서만 고민하다 결국 대부분 집에서만 지내게 되고 가족 이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경우(오오쿠사 미노루)’로 정의됨.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를 번역한 용어임.

※ ‘가족 이외의 대인관계가 없고 사회에 참여도 하지 않는 상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외출을 하는 사람이라도 가족 이외 친밀한 대인관계가 없는 상태라면 은둔형 외톨이에 포함됨(사이토 타마키, 2017)

□ **전국 현황** : 전국에 13만 5천명으로 추정(19~39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은둔형 외톨이 사례 분석

<동남신경정신과 내원자(2002~2010)에 대한 분석>

- 내원 연령 평균 : 22세
- 은둔기간 평균 : 45개월(3년9개월)
- 주요증상 :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며 방청소, 위생관리를 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 속에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것,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비만상태에 빠지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등 불규칙한 식생활이 보고됨. 생활시간도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며 이에 대한 간섭에 대해 공격적 행동이 돌출됨. 이들은 대인불안, 대인공포, 무력감,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피해적인 사고, 공격성, 자살사고,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특성을 보임(이영식 등, 2011)
- 은둔 시작 시기 : 만20~24세가 가장 많고, 다음이 만15~19세였음. 15세 미만 저연령층에서도 출현함(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 주로 관계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분	기관	개소	비율	구분	기관	개소	비율
정부	고용노동부	2	28.6	기타	서울시교육청	2	18.2
	여성가족부	2	28.6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1	9.1
	행정안전부	1	14.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1	9.1
	보건복지부	1	14.3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	18.2
	환경부	1	14.3		서울청년네트워크	1	9.1
	합계	7	100		청소는상담복지센터	1	9.1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7	4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9.1
	서울시 구청	8	47.1		신용보증기금	1	9.1
	경기도 남양주시청	1	5.9		구로문화재단	1	9.1
	강원도청	1	5.9		합계	11	100
	합계	17	100				

□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1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02-21	복지정책과
2	전라북도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11-11	사회복지과
3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05-06	사회복지과
4	전라남도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09-30	사회복지과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07-14	복지정책과
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04-17	복지서비스과
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07-14	복지정책과
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19-10-15	돌봄정책과
9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8-14	복지정책과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07-06	복지정책과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05-04	복지정책과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4-07	복지정책과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12-30	인생케어과
14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12-26	복지지원과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2-10-17	복지정책과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1-06	복지정책과
17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1-11-04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1-09-30	복지정책과
19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03-24	통합돌봄과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87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28.

발의자 : 김미연 의원, 최미희 의원,
정홍준 의원, 양동진 의원,
정광현 의원, 나안수 의원,
이영란 의원, 서선란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1. 개정이유

-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의 종류 개정(안 제6조제2호)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붙임 1】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u>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u> 3. ~ 6. (생 략)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 ----- -----. 1. (현행과 같음) 2. <u>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 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u> 3. ~ 6. (현행과 같음)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단집회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
 - 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합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공동주택의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4.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심의는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른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또는 관리인)은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라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

단(또는) 관리인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019.11.12, 2023.2.28, 2023.5.31>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

나. 가로·보안등(LED)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

라. 대문,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

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

사. 소방 및 방범시설(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시설 등)

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2. 복리시설(단지안의 주민 공동시설에 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나.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다. 주민쉼터, 벤치 등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 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하인 세대의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2.02.06>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

③ 제6조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투표 비용은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투표에 대해 지원하며, 제9조의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8.10.3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8.10.31]

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10.31]<개정 2010.12.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최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88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최미희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정홍준 의원,
발의자 : 김태훈 의원, 정광현 의원,
서선란 의원, 이영란 의원,
유영갑 의원

1. 제정이유

-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안 제5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7조)
-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안 제8조)
- 돌봄노동 종사자의 신분보장(안 제9조)
-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수당 등(안 제10조 ~ 안 제11조)
-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2조 ~ 안 제17조)
- 돌봄노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모자보건법」

5.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1】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 종사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① 시장은 돌봄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간, 인증방법 및 절차 등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2. 돌봄노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 종사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돌봄노동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자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야 하고, 돌봄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조(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돌봄노동 종사자에게 노동·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노동 종사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2. 돌봄노동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돌봄노동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보호
6.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7. 돌봄노동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제도 등의 시행
8. 그 밖에 돌봄노동 종사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복수 근무지의 경우 각 노동시간을 합산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등의 신청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원 사업의 추진
3. 처우개선수당 등 지급
4. 그 밖에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의원 2명

나. 노인돌봄노동 종사자, 노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다. 아이돌봄노동 종사자, 아이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라. 장애인돌봄노동 종사자, 장애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

마. 돌봄노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제11조(처우개선 수당 등)에 관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11조
 -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총 6개월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자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급현황 : 181개소 4,224명
 - *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 돌봄, 응급안전안심, 산후조리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 지급기준 : 1인당 10만원(연1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2,115	-423	-423	-423	-423	-423
세입(a)	-	-	-	-	-	-
세출(b)	2,115	423	423	423	423	423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5개년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비고
소요예산	2,115	423	423	423	423	423	-
증감율(%)	-	100	-	-	-	-	전년도 대비 증감율

○ 2024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22,4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22,400,000	○ 4,224명×10만원×1회 = 422,400,000	

○ 2025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22,4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22,400,000	○ 4,224명×10만원×1회 = 422,400,000	

○ 2026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22,4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22,400,000	○ 4,224명×10만원×1회 = 422,400,000	

○ 2027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22,4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22,400,000	○ 4,224명×10만원×1회 = 422,400,000	

○ 2028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422,4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422,400,000	○ 4,224명×10만원×1회 = 422,400,000	

6. 협의사항 및 부대의견 : 해당 없음

7. 작성자 : 순천시 의회의원 최미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

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10. 20.	노인장애인과
2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1. 10. 6.	복지정책과
3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7. 7.	
4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2. 12. 14.	노인장애인과
5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7. 27.	복지정책과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2023. 7. 13.	복지정책과
7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7. 12.	노인정책팀
8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7. 19.	복지정책과
9	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6. 26.	사회복지과
10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7. 17.	노인장애인과
11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4. 7.	보훈노인과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3. 30.	노인장애인과
13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6. 30.	노인장애인과
14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2023. 4. 14.	경로장애인과
15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2. 24.	
16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3. 30.	노인복지과
17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3. 31.	노인장애인과(남순연)
18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10. 17.	노인장애인과
19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8. 4.	노인장애인복지과
20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6. 30.	가정활력과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정광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89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의자 : 정광현 의원, 김미연 의원,
김태훈 의원, 신정란 의원,
김영진 의원, 이복남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

1. 제정이유

-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등 순천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안 제4조)
- 실태조사 등(안 제5조)
- 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고등교육법」

5.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1】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등 순천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전라남도 및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제6조(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에 있는 대학교 학생 아침 식사 지원사업 추진
- 대 학 교 : 3개교(순천대학교, 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
 - 재학생수 : 3개교 13,091명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학생수 : 2개교 200명(1.53%)
 - 지원 식단 기준 : 130일
 - 계 획 :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대학교에 전남 쌀을 사용한 식단의 1식당 4백원을 지원하고, 매년 참여자 10%를 확대 지원(도비 지원율에 따라 변경)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62.4	-10.4	-11.44	-12.48	-13.52	-14.56
세입(a)	-	-	-	-	-	-
세출(b)	-62.4	-10.4	-11.44	-12.48	-13.52	-14.56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5개년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 연도별	합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비 고
소요예산	62.4	10.4	11.44	12.48	13.52	14.56	-
증감율(%)	-	100	10	9.1	8.3	7.7	전년도 대비 증감율

○ 2024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10,400,000		
기타보상금	▪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10,400,000	○ 200명×130일×400원 = 10,400,000원	

○ 2025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11,440,000		
기타보상금	▪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11,440,000	○ 220명×130일×400원 = 11,440,000원	

○ 2026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12,480,000		
기타보상금	▪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12,480,000	○ 240명×130일×400원 = 12,480,000원	

○ 2027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13,520,000		
기타보상금	▪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13,520,000	○ 260명×130일×400원 = 13,520,000원	

○ 2028년

요 목	세부항목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비고
총 계		14,560,000		
기타보상금	▪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14,560,000	○ 280명×130일×400원 = 14,560,000원	

6. 협의사항 및 부대의견 : 해당 없음

7. 작성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유통팀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2023. 7. 28.	농산유통과
2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2023. 6. 1.	농식품유통과
3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2023. 8. 11.	농생명식품과
4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022. 11. 15.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90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의자 : 장경원 의원, 강형구 의원,
김미연 의원, 김태훈 의원,
오행숙 의원, 이향기 의원,
장경순 의원, 유승현 의원

1. 개정이유

- 시민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2. 주요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안 제26조)

3. 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붙임 1】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읍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u>다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 ----- -----. <u><단서 삭제></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의원 장경원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91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30.

발의자 : 양동진 의원, 김태훈 의원,
김미연 의원, 김영진 의원,
최미희 의원, 유승현 의원,
최병배 의원, 나안수 의원

1. 개정이유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0조)제1항 제2호 중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단,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로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붙임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를 “평균경사가 21도 미만인 토지(단,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u> , 다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2. <u>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단,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u> ----- ----- -----.
3.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 순천시의회의원 양동진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기존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발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10.23, 2014.07.31, 2015.10.01, 2016.07.15, 2017.09.29>

1.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순천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 다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3. <삭제 2017.12.29>

4. 제20조의4에 따른 사고지가 아닌 경우 <신설 2021.09.23>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7.31, 2021.09.23>

참고 2

타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기준제20조 제1항 제1호 관련

번호	시군명	경사도 기준	비고
1	강진군	20도미만	전남도
2	고흥군	평균 25도미만	전남도
3	곡성군	평균 18도미만	전남도
4	광양시	도시 평균20미만, 그 외 평균22미만	전남도
5	구례군	20도 미만	전남도
6	나주시	20미만	전남도
7	담양군	20도미만	전남도
8	목포시	20도미만	전남도
9	무안군	25도미만	전남도
10	보성군	25도미만	전남도
11	신안군	20도미만	전남도
12	여수시	22도미만	전남도
13	영광군	21도미만	전남도
14	영암군	20도미만	전남도
15	완도군	20도미만	전남도
16	장성군	20도미만	전남도
17	장흥군	25도미만	전남도
18	진도군	20도미만	전남도
19	함평군	20도미만	전남도
20	해남군	25도미만	전남도
21	화순군	20도미만	전남도
22	창원시	경사도 18도	경상도
23	진주시	경사도 12도	경상도
24	사천시	평균 경사도 18도	경상도
25	통영시	평균 경사도 20도	경상도
26	김해시	평균 경사도 11도	경상도
27	포항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기준	경상도

번호	시군명	경사도 기준	비고
28	경주시	평균 경사도 20도	경상도
29	김천시	경사도 25도 이하	경상도
30	안동시	경사도 30도 이하	경상도
31	구미시	경사도 25도	경상도
32	남양주시	경사도 22도	경기도
33	파주시	평균 경사도 18도·20도·23도(지역별)	경기도
34	하성시	평균 경사도 15도	경기도
35	안양시	평균 경사도 18도(녹지지역 15도)	경기도
36	구리시	평균 경사도 21도	경기도
37	김포시	평균 경사도 18도(보전용도지역 11도)	경기도
38	포천시	평균 경사도 25도	경기도
39	여주시	경사도 25도	경기도
40	안성시	경사도 25도	경기도
41	평택	평균 경사도 15도	경기도
42	수원시	녹지지역 경사도 10도	경기도
43	양평시	경사도 25도	경기도
44	성남시	경사도 15도(녹지지역 12도)	경기도
45	오산시	경사도 15도	경기도
46	이천시	경사도 25도	경기도
47	시흥시	경사도 17도	경기도
48	부천시	경사도 15도	경기도
49	용인시	평균 경사도 17.5~20도	경기도

참고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20조 1항 2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세부기준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하천·소하천·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배수시설은 배수를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까지 안전하게 분산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배수량이 토사유출 또는 붕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성토비탈면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및 비탈면의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할 것 5)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할 것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절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 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가.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나.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 및 그 주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다만,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에게 재해방지사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2)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침사지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

		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4) 삭제 <2015.11.11.>
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4)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 <2016. 12. 30.>

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적용대상 사업	세부기준
가.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공장	공장부지 면적(「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도로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토양을 잘라내는 높이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만,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것
	송전시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휴양림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2)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비고

-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부터 3)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써 완화된 허가기준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만 해당한다)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허가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제2호라목4)의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대상시설·규모 및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3호가목의 송전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마목3)·6)·10),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도시계획조례 20조 1항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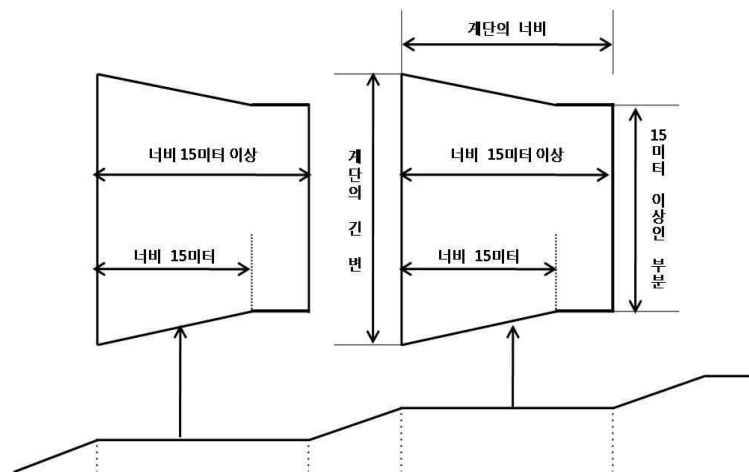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2. 8. 17.>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10조의2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가.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말뚝)·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나.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예시 참조).

[예시]



-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 4)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 5) 철도
- 6) 댐, 저수지
- 7) 공항

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공항에 대해서는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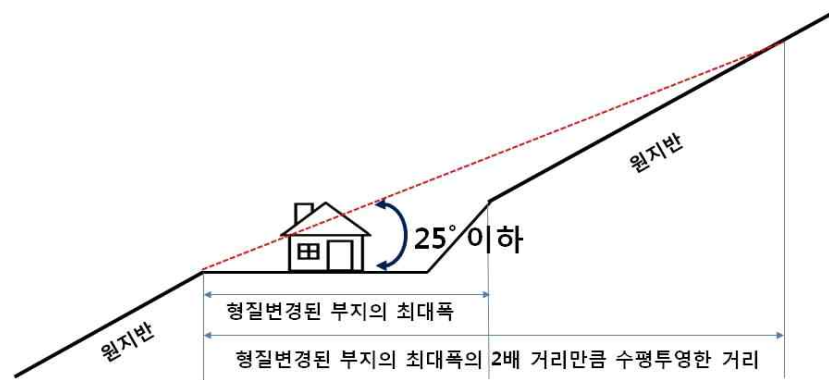
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 시]



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4. 영 별표 4 제2호가목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다. 산불발생, 축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축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성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5. 영 별표 4 제2호나목1)	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라 산사태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성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나.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6. 영 별표 4 제2호	가.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

라목1)	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관할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입목축적(산불 발생, 쏘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쏘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해 편입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3)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관할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7. 영 별표 4 제2호 라목2)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목 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0 이상 1/1,000 이하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3.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 등은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4. 위 표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992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31.

정홍준 의원, 이향기 의원,
강형구 의원, 김미연 의원,
발 의 자 : 이영란 의원, 최미희 의원,
최현아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장경원 의원

1. 제정이유

-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순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의 빈곤예방 지원 사업 추진 비용 및 위탁 비용 등의 소요가 예상됨.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의원 정홍준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아동빈곤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30.	아동청소년과
2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18.	여성아동과
3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0.	청소년과
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30.	아동복지과
5	대전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2014. 3. 7.	
6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2013. 2. 20.	
7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6.	가족행복과
8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0. 4.	아동담당관
9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0.	아동복지팀
10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5. 14.	
11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1.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
12	옥천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17.	주민복지과
13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2. 3. 3.	
14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7.	가족아동과
15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8.	
16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2. 15.	여성가족과
17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8. 12. 27.	여성보육과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오행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013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31.

발의자 : 오행숙 의원, 이복남 의원,
최병배 의원, 정홍준 의원,
김태훈 의원, 장경원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제6조)
-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안 제7조)
- 시민정원사 양성, 개방정원의 지정(안 제8조 ~ 제9조)
-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안 제10조)
- 국제교류,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안 제11조 ~ 제12조)
- 정원지원센터(안 제13조)
-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4조 ~ 제22조)
- 위탁,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5조)

3. 제정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상황 : 붙임 2

【붙임 1】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개방정원”이란 순천시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7.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에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확산을 위하여 순천시가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순천시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형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키고, 정원문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정원문화의 진흥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
4.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5.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6.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정원문화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의 날 제정)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상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제정한다.

② 정원의 날은 4월 20일로 한다.

제6조(정원의 날 문화 행사) ① 정원의 날에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원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개방정원 투어·경연대회·전시회 등 행사 개최
 4.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5.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6. 조경·화훼산업 육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8.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민정원사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인증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교육에 관하여 별표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개방정원의 지정) ① 시장은 순천시의 민간정원에 대하여 개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정원으로 지정한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주도의 정원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협력사업과 상호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양 도시 간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협약 등으로 조성하는 국외정원에 대하여 순천시의회 동의의를 얻은 후 설치,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지원센터)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둔다.

② 정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

제14조(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
4. 정원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순천만관리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정원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다.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정원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원문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시장은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3조(위탁)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시장은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순천시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제1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수강료(실습비)
(조례 제8조 관련)

구 분	기준	수강료(원)	비고
시민정원사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붙임 2】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7조(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개방정원 투어·경연대회·전시회 등 행사 개최
-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 조경·화훼산업 육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안 제8조(시민정원사 양성)

-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

○ 안 제9조(개방정원의 지정)

- 개방정원으로 지정한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안 제10조(정원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안 제11조(국제교류)

- 정원문화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양 도시 간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협약 등으로 조성하는 국외정원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3.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7조 ~ 제11조

-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0,106,880	-2,014,940	-2,018,940	-2,020,000	-2,025,000	-2,028,000
세입(a)	144,120	26,060	26,060	30,000	30,000	32,000
세출(b)	10,251,000	2,041,000	2,045,000	2,050,000	2,055,000	2,060,00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10,251	2,041	2,045	2,050	2,055	2,060
국 비	-	-	-	-	-	-
도 비	25	5	5	5	5	5
시 비	10,226	2,036	2,040	2,045	2,050	2,055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소요예산 : 2,041백만 원/연

○ 산출기초

- 정원관광·체험·경진대회·전시회 등 행사 개최 : 199백만 원
 - 열린정원 여행 운영 : 22,000,000원×2회=44백만 원
 - 화훼장식 경진대회 : 90,000,000원×1회=90백만 원
 - 반려식물 체험 행사 : 20,000,000원×1회=20백만 원
 - 조경수, 철쭉, 국화 등 전시회 개최 : 15,000,000원×3회=45백만 원
- 정원관련 문화행사 및 박람회 개최 : 1,000백만 원
- 개방정원 등록 및 지원 : 60백만 원
- 정원후방산업 연구 : 300백만 원
- 정원수 생산유통 개선지원 사업 : 150백만 원
-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 50백만 원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 282백만원

- 가든마스터 양성과정 15,000,000원×4개 과정=60백만 원
- RHS 인증 자격교육 20,000,000원×2개 과정=40백만 원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4,800,000원×10월=48백만 원
- 도인증 정원전문가 양성 14,000,000원×1식(30명)=14백만 원
- 학교교육(꼬마·미래) 프로그램 47,500,000원×2개 과정=95백만 원
- 사회적 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1,500,000원×10월=15백만 원
- 시민대상 특강(실내정원 가꾸기 등) 10,000,000원×1식=10백만 원

7. 협의사항 : 해당 없음

8.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9.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10. 협조자 (2023. 8. 31.일 기준)

정원산업과	과	장	송 명 선(☎ 749-2767)
정원산업과	정원산업정책팀장		김 선 숙(☎ 749-2780)
정원산업과	정원산업육성팀장		이 만 용(☎ 749-2943)
정원산업과	정원교육팀장		양 구 열(☎ 749-2732)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개방정원”이란 순천시 관내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형 정원 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제4조(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3.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의 날 제정)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상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제정한다.

② 정원의 날은 4월 20일로 한다.

제6조(정원문화 행사) ① 정원의 날에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원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개방정원 투어·경연대회·전시회 등 행사 개최
4.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5.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6. 조경·화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8.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민정원사 양성) ① 시장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인증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교육에 관하여 별표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수강료의 감면·반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개방정원의 지정) ① 시장은 순천시 관내의 민간정원에 대하여 개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정원으로 지정한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원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주도의 정원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협력사업과 상호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양 도시 간 상호이해와 우호교류 협약 등으로 조성하는 국외정원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 보수 및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

제12조(설치)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발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
4. 정원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9.07.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09.22, 2018.12.17, 2019.07.31>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순천만관리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정원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다.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원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1조(위탁)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시장은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16.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3호, 2016.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8.12.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생략)

25.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제1호 나목 중 경제관광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26.~41.(생략)

부칙 <조례 제2039호, 201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세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014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31.

발의자 : 이세은 의원, 나안수 의원,
최미희 의원, 우성원 의원,
이향기 의원, 오행숙 의원,
양동진 의원, 이복남 의원,
김태훈 의원

1. 제정이유

-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대상(안 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부모교육의 내용(안 제6조)
- 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안 제7조 ~ 안 제12조)
- 교류협력 등(안 제13조)
- 강사(안 제14조)
-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붙임 1】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교육 내용) 시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부모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다.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모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강사)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조례안 제12조(회의), 제15조(강사), 제17조(재정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4.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 발생은 제12조(회의), 제15조(강사), 제17조(재정지원)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 순천시의회의원 이 세 은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16. 1. 4.	여성권익가족과
2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6. 7. 14.	
3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7. 6. 12.	
4	광주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7. 11. 1.	
5	구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6. 12. 30.	여성가족과
6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1. 12. 31.	
7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7. 12. 29.	
8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2. 3. 21.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8. 22.	
10	대전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8.	
11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5.	가족행복과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6.	평생교육과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1. 4. 30.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2. 4. 28.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0. 4. 9.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1. 7. 15.	아동청소년과
17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21. 5. 12.	
18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2. 1. 7.	
19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0. 11. 18.	
20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7.	평생교육과장
21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5.	평생학습과
22	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0. 12. 24.	여성가족정책관
23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7. 8. 11.	
24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7. 7. 28.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1. 10. 1.	
26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16. 1. 4.	여성권익가족과
27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19. 6. 28.	여성아동과
28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17. 3. 2.	여성가족과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20. 3. 27.	여성가족과
30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6.	평생교육과
31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15. 5. 14.	평생교육과
32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20. 11. 13.	교육지원과
33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21. 5. 12.	
34	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20. 7. 16.	평생학습과
35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16. 10. 17.	
36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19. 11. 15.	평생교육과
37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22. 4. 20.	
38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7.	평생교육과장
39	울진군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16. 11. 8.	평생교육팀
40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5.	평생학습과
41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21. 12. 30.	
42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0. 17.	여성가족정책관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015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31.

발의자 : 나안수 의원, 유승현 의원,
이영란 의원

1. 개정이유

- 지역업체 생산 유기질비료의 구매율을 높여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안 제5조제2항)

- 관내 유기질비료 제품 구매율을 높이하고자 ‘유기질 비료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 우선 지원’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지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붙임 1】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 (생략) <u><신 설></u>	제5조(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u>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순천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의미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 관한 사항

제5조(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 시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원활한 축분 처리를 위하여 수분조절제 등 필요한 자재와 시설의 지원
2.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악취저감 등의 시설 지원

제6조(유기질비료의 유통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의 축산퇴비 처리업체에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천시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축분 퇴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유기질비료 품질개선) ①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검사 결과를 관내 농업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77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99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8. 31.

1. 제정이유

- 누리호 발사 이후 국민들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4조)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 (안 제5조)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 (안 제6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 (안 제7조 ~ 제13조)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6. 30. ~ 2023. 7.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6. 23.(가족복지과-1768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6. 5.(신성장산업과-440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6. 22.(기획예산실-864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6. 30.(순천시 공고 제2023-1402호)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공우주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시회·박람회·체험시설 및 기술 경연 사업
3. 항공우주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항공우주산업의 공정개선, 투자설비, 성능 검·인정
5.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등이 입주 가능한 단지의 조성
7. 항공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8. 항공우주관련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정부,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 중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5. 그 밖의 항공우주 관련 기관·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필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조 또는 출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사용허가 또는 대부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시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게 하고 그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1명
2.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공공기관 등의 유치)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에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시회·박람회·체험시설 및 기술 경연 사업
3. 항공우주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항공우주산업의 공정개선, 투자설비, 성능 검·인정
5.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등이 입주 가능한 단지의 조성
7. 항공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8. 항공우주관련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정부,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 중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5. 그 밖에 항공우주 관련 기관·단체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필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조 또는 출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사용허가 또는 대부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시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게 하고 그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1명
2.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위원회 참석 수당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88,900	-2,100	-74,200	-4,200	-4,200	-4,200
세입(a)	-	-	-	-	-	-
세출(b)	88,900	2,100	74,200	4,200	4,200	4,2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시비	88,900	2,100	74,200	4,200	4,200	4,2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3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1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2,100
	일반운영비	•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40,000원*1회*15인	2,100

○ 2024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74,2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74,200
	일반운영비	• 기본계획수립용역(전문기관 위탁) 70,000,000원*1회	70,000
	일반운영비	•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40,000원*2회*15인	4,200

○ 2025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4,2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4,200
	일반운영비	•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40,000원*2회*15인	4,200

○ 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4,2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4,200
	일반운영비	•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40,000원*2회*15인	4,200

○ 2027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4,2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4,200
	일반운영비	• 위원회 참석 수당 등 140,000원*2회*15인	4,2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미래산업국	신성장산업과 과	장	황 학 종 (☎ 749-4400)
	우주첨단산업팀장		김 경 주 (☎ 749-3017)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99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8. 31.

1. 개정이유

- 세계경제 성장 위축, 국내 금리인상 영향 등 경기 불확실성 지속 전망
-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 발생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소관 법률 변경

- 현행 :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변경 :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안 제3조) 존속 기한 연장

- 현행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변경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7. 31. ~ 2023. 8.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7. 21.(가족복지과-2073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7. 21.(기획예산실-1016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7. 31.(순천시 공고 제2023-1636호)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2023년 9월 30일” 을 “2027년 9월 30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순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제3조(기금의 설치) ①·②(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2027년 9월 30일-----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4조(기금의 조성)

-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기획예산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중

산단개발팀장

허병진

담 당 자

박성은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99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8. 31.

1. 제정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2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토지포함)의 취득 및 관리·운영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2조에 따라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시장은 다음 연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작성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
 - 읍·면·동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에게 신청
 - 시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의 시행 (안 제4조)
 - 지원사업은 시장이 시행(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
-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안 제5조)
 - 지원사업으로 설치, 취득 또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는 순천시로 하며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순천시에 귀속됨.
 -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6. 30. ~ 7.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6. 23.(가족복지과-181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6. 14.(기획예산실-817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6. 14.(기획예산실-817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6. 30.(순천시 공고 제2023-1423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침을 통보받은 읍·면·동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면·동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은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을 마을회 등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해당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순천시의 명의로 하여 소유 및 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 단체가 시행한 사업의 시설물을 해당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이 시설물 운영·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순천시 명의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순천시에 귀속되고,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용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할 경우, 해당 단체가 사후관리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마을회 등 단체가 소유할 경우, 수익 및 지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 외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사업의 시행
 - 지원사업으로 설치, 취득 또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는 순천시로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면(해룡면, 외서면, 별량면, 서면)에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및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1,732,000	346,400	346,400	346,400	346,400	346,400
세출(b)	1,732,000	346,400	346,400	346,400	346,400	346,4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1,732,000	346,400	346,400	346,400	346,400	346,400
기 금	1,732,000	346,400	346,400	346,400	346,400	346,4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대상지역 : 해룡면, 외서면, 별량면, 서면
- 사업기간 : 매년 해당면 4개 지역에 지원
- 산출액 : 매년 346,400천원

○ 2023년 이후 매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0
세입	소계		346,400
	세입	• 순천시 주변지역 17개 발전소	346,400
세출	소계		346,400
	지원사업	• 주변지역(해룡, 외서, 별량, 서면)에 대한 지원	346,400

○ 세입 내역

주관기관	지원금(천원)	주관기관	지원금(천원)
GSL태양광발전소	2,900	선경태양광발전소	8,200
광양그린에너지	16,500	씨지앤올촌전력	201,000
광양봉강발전소1호	6,000	월암1호발전소	15,500
광양봉강한태연발전소2호	6,000	월암2호발전소	15,500
광양봉당리발전소3호	6,000	월암3호발전소	15,500
금성에너지	8,200	월암4호발전소	15,500
동인태양광발전소	8,200	멤생이발전소	4,000
미래에너지(주)	1,000	준에너지	8,200
보현에너지	8,200	총계	346,400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과 과장 박영란 (☎ 749-8430)

팀장 황윤엽 (☎ 749-5752)

담당 나경민 (☎ 749-5755)

참고

관련 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 · 시 · 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 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 · 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99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8. 31.

1. 개정이유

- 상위법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국가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기본법」)

2. 주요내용

- (명칭개정)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 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 (자구변경) 지역정보화 → 지능정보화
- (제1조) 「국가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삭제
-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 (제22조제2항) 「사무관리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30조) “웹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6. 15. ~ 7.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4. 20.(가족복지과-123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6. 13.(기획예산실-812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6. 15.(순천시 공고 제2023-1347호)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의”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정보의”를 “지능정보의”로 한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라남도 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제30조 중 ““웹표준””을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3조 제목,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5호, 제2장 제목, 제2장제1절 제목,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2장제2절 제목,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제7조제3호, 제8조제3항제1호가목, 제8조제3항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장제3절 제목, 제15조 제목,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5조제4항제1호, 제15조제4항제7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3장 제목, 제17조 제목,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7조 제목,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4장 제목,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순천시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순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u>	<u>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순천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기본법」----- <u>지능정보화</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역정보화”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정보화부서”란 시의 지역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 <u>지능정보화</u> -----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u>지능정보화</u> -----.
4. “지역정보화본부”란 정보화전문요원,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u>지역정보</u> 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	4. - <u>지능정보화</u> ----- ----- <u>지능정보</u> 의----- -----

현행	개정안
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5.·6. (생략)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u>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u> <u>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u> <u>한다.</u> 1. ~ 4. (생략) 5. <u>지역정보화</u>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u>지역정보화</u>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절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u>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u>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u> <u>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역</u> <u>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u> <u>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② <u>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u> <u>획과 전라남도의 지역정보화기본</u> <u>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의 여건과</u> <u>특성에 맞게 부분별 지역정보화계</u> <u>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순천시</u> <u>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u>확정한다.</u>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 5.·6. (현행과 같음)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u>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u>지능정보화</u>-----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능정보화</u> ----- ----- 제2장 <u>지능정보화</u>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절 <u>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u> 2. <u>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u> 3. <u>분야별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u> 4. <u>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u> 5. <u>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u> 6. <u>건강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u> 7. <u>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u> 8. <u>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u> 9. <u>재원의 조달 및 운용</u> 10. <u>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④ <u>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u>기본계획에 따라</u> 순천시 <u>지역정보화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매년 순천시 <u>지역정보화 시행계획</u>(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 <u>지역정보화위원</u>	제5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u>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라남도 정보화시행계획</u>-----<u>지능정보화</u>-----<u>지능정보화 실행계획</u>(이하 “<u>실행계획</u>”-----). ② ----- <u>지능정보화</u>-----

현행	개정안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 -----.
제2절 순천시 <u>지역정보화</u> 위원회	제2절 순천시 <u>지능정보화</u> 위원회
제6조(설치) 시장은 <u>지역정보화</u>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u>지역정보화</u>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설치) ----- <u>지능정보화</u> ----- ----- ----- <u>지능정보화</u> ----- -----.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 -----.
1. <u>기본계획</u> 및 <u>시행계획</u> 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1. <u>실행계획</u> ----- -----
2. <u>기본계획</u> 및 <u>시행계획</u> 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2. <u>실행계획</u> ----- -----
3. 그 밖에 <u>지역정보화</u> 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u>지능정보화</u> ----- ----- -----
제8조(구성) ①·② (생략)	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③ ----- -----.
1. 당연직 위원	1. -----
가. <u>지역정보화</u> 업무 담당 국장	가. <u>지능정보화</u> -----
2. 위촉직 위원	2.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u>지역정보화</u>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 <u>지능정보화</u> ----- -----
제13조(간사) ① (생략)	제13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간사는 <u>지역정보화</u>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3절 <u>지역정보화</u> 책임관 및 시설장비 제15조(<u>지역정보화</u> 책임관) ① 시장은 시의 <u>지역정보화</u>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u>지역정보화</u>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u>지역정보화</u>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u>지역정보화</u>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u>지역정보화</u>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u>지역정보화</u>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2. ~ 6. (생략) 7. <u>지역정보화</u>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생략) 제16조(시설장비) 시장은 <u>지역정보화</u> 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확보하여	② ----- <u>지능정보화</u> ----- -----. 제3절 <u>지능정보화</u> 책임관 및 시설장비 제15조(<u>지능정보화</u> 책임관) ① ----- ----- <u>지능정보화</u> ----- ----- <u>지능정보화</u> ----- ----- <u>지능정보화</u> ----- -----. ② ----- <u>지능정보화</u> ----- -----. ③ ----- <u>지능정보화</u> ----- ----- -----. ④ ----- -----. 1. <u>지능정보화</u> ----- ----- 2. ~ 6. (현행과 같음) 7. <u>지능정보화</u> ----- --- 8.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설장비) ----- <u>지능정보화</u> ----- -----

현행	개정안
야 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u>지역정보화</u>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 협의실 등) 제3장 <u>지역정보화</u>의 추진 제17조(분야별 <u>지역정보화</u>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u>지역정보화</u>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u>지역정보화</u>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u>지역정보화</u>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u>지역정보화</u>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 1.·2. (현행과 같음) 3. ----- <u>지능정보화</u>----- ----- ----- 제3장 <u>지능정보화</u>의 추진 제17조(분야별 <u>지능정보화</u>의 추진) ① ----- ----- ----- ----- <u>지능정보화</u>----- -----. ② ----- <u>지능정보화</u>----- ----- ----- ----- -----. ③ ----- <u>지능정보화</u> ----- ----- -----.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 <u>지능정보화</u>----- ----- ----- ----- -----.

현행	개정안
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u>지역정보화</u> 추진을 위하여 <u>지역정보화</u> 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u>지능정보화</u> ----- ----- <u>지능정보화</u> ----- ----- ----- -----.
제20조(정보시스템 설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u>지역정보화</u>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지역정보통합센터</u> 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정보시스템 설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지능정보화</u> ----- ----- <u>지능정보</u> ----- -----.
제21조(표준화) 시장은 <u>지역정보화</u> 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화) ----- <u>지능정보화</u> ----- ----- ----- ----- -----.
제22조(전산정보 관리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전산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 <u>사무관리규정</u> 」에 따른다.	제22조(전산정보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u> 」----- -----.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 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 다. 1. ~ 3. (생략)	제26조(행정정보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자치법」 제154조-----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지역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u>지역정보화</u>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u>지역정보화</u> 교 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 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u>지역정보화</u> 교육 기반 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 간기관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④ 시장은 <u>지역정보화</u> 전담공무원 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제27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 ----- ----- <u>지능정보화</u> ----- ----- -----. ② ----- <u>지능정보화</u> ----- ----- ----- -----. ③ ----- <u>지능정보화</u> ----- ----- ----- -----. ④ ----- <u>지능정보화</u> ----- -----

현행	개정안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u>지역정보화</u>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u>지역정보화</u>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u>지역정보화</u>의 역기능 방지 제2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u>지역정보화</u>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u>지역정보화</u>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장 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u>웹표준</u>”을 준수하여야 한다.	----- -- <u>지능정보화</u>----- ----- ----- ----- ----- ----- ----- <u>지능정보화</u>----- -----. 제4장 <u>지능정보화</u>의 역기능 방지 제2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 - <u>지능정보화</u>----- --- <u>지능정보화</u>-----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 ----- ----- ----- ----- -- 「<u>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u>」-----.
제31조(정보보호) ① (생략) ② 시장은 <u>지역정보화</u>본부에 근무	제31조(정보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능정보화</u>-----

현행	개정안
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u>지역정보화</u>부서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 · 통보하고 <u>지역정보화</u>본부 주관 부서의 장은 <u>지역정보화</u>전문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④ (생략) 제32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 (생략) ② <u>지역정보화</u>본부의 보관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보험) 시장은 순천시 <u>지역정보화</u>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 -----. ③ <u>지능정보화</u>----- ----- ----- <u>지능정보화</u>----- ----- <u>지능정보화</u>-----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능정보화</u>----- ----- ----- -----. 제33조(보험) ----- <u>지능정보화</u>-----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디지털정책팀장

이진숙

담 당 자

박승환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00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8. 31.

1. 개정이유

- 「도서관법」의 개정(2022.12.8.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
- 신대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위치 변경 및 이용시간 현행화
- 부대시설 관리 근거 조항 마련으로 안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안 제5조) 시립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시간 현행화
 - (열람실) 08:00~23:00→08:00~22:00 (자료실) 토요일 08:00~18:00→09:00~22:00
- (안 제12조) 신축 신대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추가, 띄어쓰기 정비, 주차장 요금 징수 근거 마련
 - (추가) 강당·극장 : ^{1회} 4시간 80천원, ^{1일} 200천원 / ^{1회} 4시간 25천원, ^{1일} 60천원
 - (신설) 시장은 시립도서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안 제16조) 제목 변경, 주차장 안전관리 조항 신설
 - (제목) 변상 → 변상 등
 - (신설)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나 인명피해 경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하고, 주차장 내 발생 가능성 있는 사고 대비 보험 가입할 수 있다
- (안 제18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도서관법」 제30조 → 「도서관법」 제34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서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7. 31. ~ 8.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7. 27.(가족복지과-2133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7. 31.(기획예산실-10603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7. 28.(기획예산실-1684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7. 31.(순천시 공고 제2023-1652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이용시간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열람실	자료실	
		평일	토·일요일
삼산·연향·조례호수·신대도서관	08:00~22:00	09:00~22:00	
해룡농어촌·풍덕글마루도서관	09:00~18:00		

제12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시립도서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변상)” 을 “(변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장은 주차장 내 발생 가능성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중 “「도서관법」 제30조” 를 “「도서관법」 제34조” 로 한다.

별표 1,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삼산도서관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그림책도서관	순천시 도서관길 33(동외동)
연향도서관	순천시 연향번영길 54(연향동)
기적의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 도서관길 60
조례호수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31(조례동)
해룡농어촌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풍덕글마루도서관	순천시 풍덕1길 52(풍덕동)
신대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71

[별표 3]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표(제12조 관련)

사용기준	사용시간	비 고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야간	18:00 ~ 22:00	
1일	09:00 ~ 22:00	

※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도서관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도서관별	시설명	규 모	사 용 료		비 고
			1회(4시간)	1일	
삼산도서관	시청각실	계단식 객석90석	70,000	18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1강의실	80석	50,000	13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2강의실	50석	40,000	100,000	전자칠판, 음향
	3강의실	20석	20,000	50,000	
	동아리방	10석 내외	15,000	40,000	
그림책도서관	강의실	40석 내외	30,000	80,000	프로젝트, 음향
	동아리방	20석 내외	20,000	50,000	프로젝트, 음향
연향도서관	중극장	계단식 객석214석	120,000	30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50석	40,000	100,000	
	2강의실	30석	25,000	60,000	
	토론실	20석	20,000	50,000	
	전시실	142m ²	-	40,000	
조례호수 도서관	강당	계단식 객석120석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세미나실	20석 내외	20,000	50,000	
기적의 도서관	강 당	150 ~ 200명	100,000	25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30석	25,000	60,000	
	2강의실	20석	20,000	50,000	
신대도서관	강당	120명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극장	계단식 객석52석	25,000	6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40석	30,000	8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2강의실	20석	20,000	5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현행과 같음)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열람실</th><th colspan="2">자료실</th></tr><tr><th>평일</th><th>토·일요일</th></tr><tr><td>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td><td>08:00~23:00</td><td>09:00~22:00</td><td>08:00~18:00</td></tr><tr><td>해동농어촌·종덕글마루도서관</td><td colspan="3">09:00~18:00</td></tr></table>	구분	열람실	자료실		평일	토·일요일	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	08:00~23:00	09:00~22:00	08:00~18:00	해동농어촌·종덕글마루도서관	09:00~18:00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열람실</th><th colspan="2">자료실</th></tr><tr><th>평일</th><th>토·일요일</th></tr><tr><td>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td><td>08:00~22:00</td><td colspan="2">09:00~22:00</td></tr><tr><td>해동농어촌·종덕글마루도서관</td><td colspan="3">09:00~18:00</td></tr></table>	구분	열람실	자료실		평일	토·일요일	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	08:00~22:00	09:00~22:00		해동농어촌·종덕글마루도서관	09:00~18:00		
구분			열람실	자료실																									
	평일	토·일요일																											
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	08:00~23:00	09:00~22:00	08:00~18:00																										
해동농어촌·종덕글마루도서관	09:00~18:00																												
구분	열람실	자료실																											
		평일	토·일요일																										
삼산·연항·조례호수·신대도서관	08:00~22:00	09:00~22:00																											
해동농어촌·종덕글마루도서관	09:00~18:00																												
제12조(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③ (생략) 〈 신 설 〉	제12조(시설의 사용료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립도서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변상) ① ~② (생략) 〈 신 설 〉	제16조(변상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주차장 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설치) 「도서관법」 제34조----- ----- ----- -----.																												

현

행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명칭	위치
삼산도서관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그림책도서관	순천시 도서관길 33(동외동)
연향도서관	순천시 연향변영길 54(연향동)
기적의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 도서관길 60
조례호수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31(조례동)
해룡농어촌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풍덕글마루작은도서관	순천시 풍덕1길 52(풍덕동)
신대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1

[별표 3]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표(제12조 관련)

사용기준	사용시간	비고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야간	18:00 ~ 22:00	
1일	09:00 ~ 22:00	

※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도서관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 도서관 시설 사용료

도서관별	시설명	규모	사 용 료		비고
			1회 (4시간)	1일	
삼산도서관	시청각실	계단식 객석90석	70,000	18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1강의실	80석	50,000	13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2강의실	50석	40,000	100,000	전자칠판, 음향
	3강의실	20석	20,000	50,000	
	동아리방	10석 내외	15,000	40,000	
그림책도서관	강의실	40석 내외	30,000	80,000	프로젝트, 음향
	동아리방	20석 내외	20,000	50,000	프로젝트, 음향
연향도서관	중극장	계단식객석214석	120,000	30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50석	40,000	100,000	
	2강의실	30석	25,000	60,000	
	토론실	20석	20,000	50,000	
	전시실	142㎡	-	40,000	
조례호수도서관	강당	계단식객석120석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세미나실	20석 내외	20,000	50,000	
기적의도서관	강당	150 ~ 200명	100,000	25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30석	25,000	60,000	
	2강의실	20석	20,000	50,000	

개

정

안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명칭	위치
삼산도서관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그림책도서관	순천시 도서관길 33(동외동)
연향도서관	순천시 연향변영길 54(연향동)
기적의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 도서관길 60
조례호수도서관	순천시 조례2길 31(조례동)
해룡농어촌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0
풍덕글마루도서관	순천시 풍덕1길 52(풍덕동)
신대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71

[별표 3]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표(제12조 관련)

사용기준	사용시간	비고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야간	18:00 ~ 22:00	
1일	09:00 ~ 22:00	

※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도서관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 도서관 시설 사용료

도서관별	시설명	규모	사 용 료		비고
			1회 (4시간)	1일	
삼산도서관	시청각실	계단식 객석90석	70,000	18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1강의실	80석	50,000	13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2강의실	50석	40,000	100,000	전자칠판, 음향
	3강의실	20석	20,000	50,000	
	동아리방	10석 내외	15,000	40,000	
그림책도서관	강의실	40석 내외	30,000	80,000	프로젝트, 음향
	동아리방	20석 내외	20,000	50,000	프로젝트, 음향
연향도서관	중극장	계단식객석214석	120,000	30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50석	40,000	100,000	
	2강의실	30석	25,000	60,000	
	토론실	20석	20,000	50,000	
	전시실	142㎡	-	40,000	
조례호수도서관	강당	계단식객석120석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세미나실	20석 내외	20,000	50,000	
기적의도서관	강당	150 ~ 200명	100,000	25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30석	25,000	60,000	
	2강의실	20석	20,000	50,000	

신대도서관	강당	120명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극장	계단식 객석52석	25,000	6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40석	30,000	8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2강의실	20석	20,000	5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12조(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대도서관 시설유지 관리비와 운영비용, 대관료 수입
- 산출근거 기준 : 평균 물가상승률 적용 - 101.9%, 평균 수입 적용 - 1,339천원
 - 최근 5년간 수도·전기 물가상승률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평 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9%	0.7%	1.2%	0.5%	1.6%	5.5%	

- 최근 5년간 대관료 수입 (단위 : 천원)

평 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339	9,611	6,670	310	920	2,560	3개도서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2,353,643	-303,651	-512,498	-512,498	-512,498	-512,498
세입(a)	203,886	22,654	45,308	45,308	45,308	45,308
세출(b)	2,557,529	326,305	557,806	557,806	557,806	557,80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2,557,529	326,305	557,806	557,806	557,806	557,806
국 비	219,840	43,968	43,968	43,968	43,968	43,968
시 비	2,337,689	282,337	513,838	513,838	513,838	513,838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가. 세출 : 557,806천원

- 도서MARC 및 장비작업 : 2,200원×5,600권=12,320천원
- 야간경비·무인경비 용역·소방·전기안전관리·정수가·비데임대용역 등 : 123,204천원
 - 월 10,267천원×12월=123,204천원

- 전가·도시가스·수도·승강기·시설유지관리 : 187,089천원 / * 평균 물가상승률 적용
 - ('24) 월15,300천원×12월×101.9%=187,089천원
- 도서구입 : 19,000원×5,600권=106,400천원
 - * 대한출판문화협회 평균 도서정가 금액 적용 : 권 당 19,000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 : 128,793천원
 - (개관시간연장근로자) 87,936천원/10,100원×8시간×328일×3명=79,508천원,
 - ↳ 국비 보조 4대보험 8,428천원
 - (환경정비·실관리 등) 40,857천원/9,620원×8시간×160일×3명=36,941천원,
 - 4대보험 3,916천원
 - ('23) 87,936천원÷2회=43,968천원(6개월치) + 10,215천원(10~12월 근무)=54,183천원

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시행 2021. 2. 1.]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96호, 2021. 2. 1., 일부개정]

- 제4조(주차장운영)** ① 주차장운영시간은 08:00~19:00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및 주차장 여건,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 ② 도서관장은 도서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요일제, 5부제, 2부제 등)
- ③ 도서관장은 감염병 및 재난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①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③ 도서관에서는 주차구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비키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400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8. 31.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구역별 조례 제정 필요
-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 반영을 통해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할 수 있음.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및 동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7. 31. ~ 8.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7. 26.(가족복지과-2122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7. 30.(기획예산실-106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7. 31.(순천시 공고 제2023-1666호)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업구역별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이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대중교통팀장

김도연

담 당 자

김도훈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 종	사 업 의 구 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교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이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00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8. 31.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 일부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 으로 개정
- (안 제2조)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으로 개정
-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금액 추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신설>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7. 31. ~ 8.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7. 26.(가족복지과-2122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7. 20.(기획예산실-1013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7. 31.(순천시 공고 제2023-1632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날로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날로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날로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참고

관련 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01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8. 31.

1. 개정이유

-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공중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료 현실화 및 준용 조례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 공중목욕탕 이용료 현실화(안 제18조 및 별표 3)
 -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라목 삭제
 - 제18조 제2항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1일 이용료 2,000원 신설
 - [별표 3] 목욕탕 이용료: 현행 대비 1일 이용료 각 1,000원, 월 이용료 각 10,000원 인상 및 자구 수정
- 준용 조례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4조)
 - (현행)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개정)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8. 1. ~ 8.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7. 26.(가족복지과-2122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7. 28.(기획예산실-1055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8. 1.(순천시 공고 제2023-1660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1일 이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제24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목욕탕 이용료(제17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일반인		어린이		비고
	1일이용	월회원	1일이용	월회원	
순천시 관내거주자	3,000	30,000	2,000	20,000	
순천시 관외거주자	5,000	50,000	3,000	30,000	
비고	1. “일반인”이란 13세 이상,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를 말한다. 2.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시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3.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4. 분기회원은 월회원 이용료 3배의 100분의 85, 반년 회원은 월 회원 이용료 6배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절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이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가. ~ 다. (생략) 라.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신설>	제18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1일 이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 -----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별표 3] 목욕탕 이용료(제1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목욕탕 이용료(제17조 관련) (단위 : 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일반인</th><th colspan="2">어린이</th><th rowspan="2">비고</th></tr><tr><th>1일이용</th><th>월회원</th><th>1일이용</th><th>월회원</th></tr><tr><td>순천시 관내거주자</td><td>2,000</td><td>20,000</td><td>1,000</td><td>10,000</td><td></td></tr><tr><td>순천시 관외거주자</td><td>4,000</td><td>40,000</td><td>2,000</td><td>20,000</td><td></td></tr><tr><td>비고</td><td colspan="5">1. “일반인”이란 13세 이상,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를 말한다. 2.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시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3.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4. 분기회원은 월회원 이용료X3의 100분의 85, 반년 회원은 월회원 이용료X6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절사한다.</td></tr></table>	구분	일반인		어린이		비고	1일이용	월회원	1일이용	월회원	순천시 관내거주자	2,000	20,000	1,000	10,000		순천시 관외거주자	4,000	40,000	2,000	20,000		비고	1. “일반인”이란 13세 이상,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를 말한다. 2.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시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3.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4. 분기회원은 월회원 이용료X3의 100분의 85, 반년 회원은 월회원 이용료X6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절사한다.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일반인</th><th colspan="2">어린이</th><th rowspan="2">비고</th></tr><tr><th>1일이용</th><th>월회원</th><th>1일이용</th><th>월회원</th></tr><tr><td>순천시 관내거주자</td><td>3,000</td><td>30,000</td><td>2,000</td><td>20,000</td><td></td></tr><tr><td>순천시 관외거주자</td><td>5,000</td><td>50,000</td><td>3,000</td><td>30,000</td><td></td></tr><tr><td>비고</td><td colspan="5">1. “일반인”이란 13세 이상,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를 말한다. 2.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시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3.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4. 분기회원은 월회원 이용료 3배의 100분의 85, 반년 회원은 월회원 이용료 6배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절사한다.</td></tr></table>	구분	일반인		어린이		비고	1일이용	월회원	1일이용	월회원	순천시 관내거주자	3,000	30,000	2,000	20,000		순천시 관외거주자	5,000	50,000	3,000	30,000		비고	1. “일반인”이란 13세 이상,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를 말한다. 2.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시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3.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4. 분기회원은 월회원 이용료 3배의 100분의 85, 반년 회원은 월회원 이용료 6배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절사한다.				
구분		일반인		어린이			비고																																																		
	1일이용	월회원	1일이용	월회원																																																					
순천시 관내거주자	2,000	20,000	1,000	10,000																																																					
순천시 관외거주자	4,000	40,000	2,000	20,000																																																					
비고	1. “일반인”이란 13세 이상,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를 말한다. 2.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시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3.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4. 분기회원은 월회원 이용료X3의 100분의 85, 반년 회원은 월회원 이용료X6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절사한다.																																																								
구분	일반인		어린이		비고																																																				
	1일이용	월회원	1일이용	월회원																																																					
순천시 관내거주자	3,000	30,000	2,000	20,000																																																					
순천시 관외거주자	5,000	50,000	3,000	30,000																																																					
비고	1. “일반인”이란 13세 이상,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를 말한다. 2.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시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어린이에 준한다. 3. 시설이용권은 1일 1회 사용으로 한다. 4. 분기회원은 월회원 이용료 3배의 100분의 85, 반년 회원은 월회원 이용료 6배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절사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4. 미첨부 사유

- 공중목욕탕 사용료 인상은 편익시설의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으로 이용료 인상에 따른 별도 소요비용 없음

5. 작성자(참여자)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자원시설관리팀장	정우창
	담 당 자	한미연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

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후략)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후략)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01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8. 31.

1. 개정이유

- 상위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인용 법령, 조항, 용어 등 정비
(안 제16조제3항, 제19조제4항, 별표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의 제명 변경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8조의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6. 30. ~ 7.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5. 23.(가족복지과-1524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6. 20.(기획예산실-854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6. 30.(순천시 공고 제2023-1460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4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로,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을 “측정된”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43조 제3항”을 “영 제43조”로 한다.

제38조 중 “제33조 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제16조제3항)

□ 대상 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② (생 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 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 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의 규정에 따라 ----- ----- ----- ----- -----.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 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 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라 ----- ----- -----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의2 규정에 따라 ----- ----- 측정된 ----- -----.
⑤ (생 략)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 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현행	개정안
을 참작하여 <u>영 제43조 제3항</u>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정한다. 제38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u>제33조 제2항</u>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제16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 (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당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u>영 제43조</u> ----- ----- -----. 제38조(강제징수) ----- ----- ----- ----- <u>제35조제2항</u> ----- ----- ----- -----.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제16조제3항) □ 대상 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u>물환경보전법</u>」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u>물환경보전법</u>」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u>물환경보전법</u>」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 (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당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 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 맑은물행정과 과장

최광수(☎ 749-6433)

상하수요금팀장

장다순(☎ 749-6486)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01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3. 8. 31.

1. 개정이유

- 2011. 7. 28.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명칭 변경에 따른 공식 명칭 사용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효율적인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순천 낙안읍성 관람료 사용 세부 규정 추가
-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타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사적지(“순천 낙안읍성”) 공식 명칭 사용
 - ※ 1983. 6. 14. 사적 제302호로 지정(낙안읍성) 이후
 - 2011. 7. 28. 지정명칭 변경(순천 낙안읍성 / 順天 樂安邑城)
- (안 제23조제1항제13호) 관람료 등의 사용 세부규정 추가
 - 낙안읍성 내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 (안 제23조제3항) 기타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 초가 이영이기에 소요되는 경비, 낙안읍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재 보존관리비, 낙안읍성 내 마을 주민 일자리 제공 사업비, 낙안읍성 내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에 대한 경비는 낙안읍성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9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6. 30. ~ 7.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6. 22.(가족복지과-1795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6. 27.(기획예산실-893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6. 30.(순천시 공고 제2023-1462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를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낙안읍성” 을 “순천 낙안읍성” 으로 한다.

제3조 중 “낙안읍성의” 를 “순천 낙안읍성(이하 “낙안읍성” 이라 한다)” 로 한다.

제19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순천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낙안읍성 내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③ 제1항제7호, 제8호의 문화재보존관리비, 제9호, 제13호에 대한 경비는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를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6호 중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2호 중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u>낙안읍성</u>의 공개,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사용,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개) 시장은 <u>낙안읍성</u>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낙안읍성 내 모든 시설과 유물을 공개한다. 제19조(위탁관리 등) 시장은 시설물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u>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운영을 할 수 있다.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① 관람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u>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 ----- <u>순천 낙안읍성</u> ----- ----- ----- -----. 제3조(공개) ----- <u>순천 낙안읍성</u> (이하 “낙안읍성”이라 한다) ----- -----. 제19조(위탁관리 등) ----- ----- ----- ----- 「<u>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 ----- ----- ----- -----.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① ----- ----- -----.

현행	개정안
1. ~ 12. (생략) <u><신설></u> <u>13.</u> (생략) ② (생략) <u><신설></u>	1. ~ 12. (현행과 같음) <u>13. 낙안읍성 내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u> <u>14.</u>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제7호, 제8호의 문화재 보존관리비, 제9호, 제13호에 대한 경비는 낙안읍성 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u>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 【제1항 13호】 관람료 등의 사용 규정 신설(낙안읍성 내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나. 【제3항】 기타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타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에 따른 사업비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8,338,924	-1,653,537	-1,634,316	-1,684,626	-1,656,482	-1,709,963
세입(a)	6,110,000	1,110,000	1,200,000	1,200,000	1,300,000	1,300,000
세출(b)	14,448,924	2,763,537	2,834,316	2,884,626	2,956,482	3,009,96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시비	8,338,924	1,653,537	1,634,316	1,684,626	1,656,482	1,709,963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가. 세출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산출액 : 총 2,763,537천원

- 추가 이영이기에 소요되는 경비 : 1,904,300천원

- 낙안읍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재 보존관리비 : 565,477천원

- 낙안읍성 내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 293,760천원

○ 산출근거

- 추가 이영이기에 : 22,640㎡(총면적)*84,112원(제공미터 당 단가)

- 문화재 보존관리비 : 538,037천원(전년도 사업비)에 물가 상승률(5.1%) 적용

-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 34명(활동인원)*6만원(일 활동비)*16일*9개월(활동월수)

나. 세입

○ 사업기간 : 상시

○ 산 출 액 : 1,110,000천원

○ 산출근거 : 2023박람회 연계 관람객 반영 추정치 ※ 전년도 관람료 : 722,808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 장 손정순 (☎ 8835)

관리팀장 박영준 (☎ 8836)

참고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후략)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후략)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후략)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후략)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